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주간 입법 동향

Vol. 35 (2021. 11. 8 ~ 11. 12)

DR & AJU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법무법인(유한)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국내 로펌 최초로 2019년 8월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센터는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리며, 매주 목요일에 주간입법동향을 송부해드리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pr@draju.com으로 문의 바랍니다.

주요 법안 동향

법안 종류	키워드	주요 법안	주요 내용
발의안	공정거래 기업	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재가격 급등에 따른 추가비용을 납품대금에 반영하도록 함 등.
	ESG	②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등의 기본원칙 및 환경영향평가항목에 '환경용량'의 개념을 포함토록하고,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사업계획 면적이 5000㎡ 이상일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도록 규정.
국회 계류안	기업	③ **모빌리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모빌리티 특화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한 근거 마련.
공포 법령	기업	④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건물 등 일정한 구역 내에서 특정 대역의 주파수를 이용하여 맞춤형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5세대 이동통신 특화망 사업을 기간통신사업 등록의 결격사유, 외국인 주식소유 제한 등의 규제가 적용되는 회선설비 보유사업에서 제외.
입법/행정 예고	기업	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술자료 유용행위 관련 조사거부에 대한 과태료 상향, 비밀유지계약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도입.

1. 발의

*각 법률안 및 검토보고서 확인을 위해서는, 법률안 밑에 있는 링크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제안자	법안명	내용	관련기사	진행 경과
1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원유, 철광석, 펄프 등 원자재값 급등으로 인하여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제조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중소기업중앙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인해 2020년 말 대비 올해 공급원가가 26.4%나 상승했음에도, 이를 납품대금에 전부 반영한 중소기업은 6.2%에 불과함. 이처럼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납품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탁기업에 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납품대금 조정제도'를 두고 있으나,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고, 거래단절을 우려한 중소기업이 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임. 따라서 원자재 비중이 높은 물품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원자재 기준가격 및 납품대금 조정 방법을 기재한 표준약정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거래 당사자간 자율적으로 원자재 가격과 납품대금을 연동하여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공정한 시장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납품대금에서 원자재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 위탁기업은 주요 원자재 기준가격을 정하고,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 방법을 약정서에 기재하도록 함(안 제21조제2항 신설). 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거래하도록 하기 위하여 표준약정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하도록 함(안 제21조제3항 신설). 다. 원자재 기준가격이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이상 상승하는 경우, 위탁기업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추가로 발생한 비용을 납품대금에 반영하여 지급하도록 함(안 제22조제7항 신설). 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추가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22조제8항 신설 및 제43조제1항). 출처: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T2C1X1W0S2E9N0L9F1L0G5O9X6A4Y5		21.11.03. 제안

번호	제안자	법안명	내용	관련기사	진행 경과
2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오염 · 환경훼손의 사전예방 수단으로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 · 시행함에 있어서 해당 계획 또는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 · 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는 제도임. 그런데 어떤 사업 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때 그 사업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 환경훼손은 그 절대적인 양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의 자정능력을 고려하여 평가되어야만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건강한 국민생활을 유지하는데 의미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에 일정 지역의 환경이 스스로를 정화하거나 복원 시켜 그 환경의 질적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정화 능력의 최대치를 의미하는 “환경용량”을 정의하고 환경영향평가등의 기본원칙 및 환경영향평가항목에 환경용량의 개념을 포함하여 법을 정비하고자 함. 또한 자연환경 보전의 필요성이 높은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에 따른 생태 · 자연도 1등급 권역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사업계획 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도록 하고자 함(안 제2조제7호 · 제7조제2항 후단 신설 및 제4조제1호 · 제43조제1항제1호). 출처: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C2X1L0T9K0B9O0P9V1V9K0A4V6R8X1	이데일리 21.11.05. [e법안 프리즘] 윤준병, ‘환경영향평가 강화’ 개정안 발의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292726629242768&mediaCodeNo=257&OutLnkChk=Y	**21.11.05.** **제안**

2. 국회 계류안

번호	제안자	법안명	내용	관련기사	진행 경과
3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모빌리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그간 교통 관련 법 체계와 정책이 주로 교통망의 효율적인 공급과 수송능력 확대 등 공급자 관점으로 추진되어 오면서, 최근 다양한 단거리 이동수단의 등장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심화되고 있는 개인 이용자 중심의 새로운 이동성 패러다임을 반영하기 어려운 실정임 특히, 한 지점에서 역, 버스 정류장 등 지역 내 주요 교통거점까지의 접근 이동성이나 교통거점에서 목적지까지의 연계 이동성은 국민들의 일상에서 꼭 필요한 요소로서, 기존의 교통시스템을 보완하면서 전반적인 교통시스템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필수적이나, 현행의 교통 관련 법 체계에서는 사각지대로 남아 있음 아울러, 교통을 둘러싼 환경과 여건의 급격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교통 분야의 다양한 규제들은 새로운 업종 및 수단, 서비스를 수용하고 육성 · 지원하는데 있어 장애요인으로 작용함으로써, 변화에 능동적인 대처가 어렵고 궁극적으로 국민 불편을 초래해 온 것이 사실임 이에, 미래 교통혁신을 선도하고 국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의 수송력 위주 거점 간 교통과 차별화된 이용자 관점의 지역 내 이동성(모빌리티)을 활성화함과 동시에, 빠르게 진행되는 기술혁신을 교통체계 · 서비스에 접목하려는 시도와 서비스 경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혁신의 실험장을 조성하는 등 과감한 지원을 통해 국민의 교통편의를 획기적으로 증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모빌리티 정책을 합리적으로 수립 · 시행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전국 모빌리티 조사를 실시하되,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조사 수행을 위해 시 · 도지사에게 관할 행정구역 내 조사대상 우선순위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전국 모빌리티 조사를 토대로 모빌리티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모빌리티 개선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평가하여 우수한 지자체에 대해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전국 모빌리티 조사,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시범사업 등 각종 모빌리티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지원하기 위해 모빌리티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머니투데이 21.11.08. 컨트롤타워 없고 사공만 많다…혁신 핸들 꺾는 규제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110417422127611	20.09.18. 제안 20.11.19. 상임위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21.06.18. 소위회부

번호	제안자	법안명	내용	관련기사	진행 경과
			라. 일정 규모 이상 개발사업 등 추진 시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생활모빌리티 활성화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활성화대책 이행 상황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지자체 또는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개선 권고 또는 시정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마.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 등을 시험 · 검증할 목적으로 사업을 하려는 자는 허가 등의 근거 법령에 기준 · 규격 · 요건 등이 없거나 기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모빌리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빌리티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하도록 정함(안 제12조, 제13조, 제14조) 바.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빌리티 수단 · 서비스 및 기술의 이용 · 보급 촉진, 실제 교통에 접목하고 이를 확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범사업을 할 수 있으며, 참여 지자체 또는 민간기업 등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15조) 사.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빌리티 관련 데이터의 활용 활성화를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보유한 데이터의 제공 또는 연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16조) 아. 모빌리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부여 등의 심의 · 의결, 관련 법령 및 규제 개선 권고 등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모빌리티위원회를 설치함(안 제17조 및 제18조) 자. 모빌리티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행정적 · 재정적 ·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제20조 등) 출처: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Z2L0F0Z9G1U8Y1L7Z5M6T5X8G9S5H4		

3. 공포 법령

번호	소관부처	법안명	내용	관련기사	일자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물 등 일정한 구역 내에서 특정 대역의 주파수를 이용하여 맞춤형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5세대 이동통신 특화망 사업을 기간통신사업 등록의 결격사유, 외국인 주식소유 제한 등의 규제가 적용되는 회선설비 보유사업에서 제외하여 보다 많은 사업자들이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5세대 이동통신 특화망 사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출처: https://www.law.go.kr/법령/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21.11.09. 시행

4. 입법/행정 예고 법령

번호	소관부처	법안명	내용	관련기사	예고기간
5	중소벤처기업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개정이유 비밀유지계약 도입 등을 통해 수·위탁거래에서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18431호, 2021.8.17. 개정, 2022. 2. 18.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 제21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체결하여야 하는 비밀유지계약의 구체적인 기재사항을 규정(안 제14조) 나.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장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에서 고위공무원단 공무원으로 변경(안 제21조) 다. 기술자료 유용행위 관련 조사거부에 대한 과태료 상향, 비밀유지계약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도입 등 개정법률 내용을 반영(안 제28조) 1) 시행령 별표2의 일반기준에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누적처분 부과기준을 명시하고, 개별기준에 법 제25조 제2항의 기술자료 유용 관련 조사거부의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을 1천만원, 2천5백만원, 5천만원으로 누적처분에 따라 세분화함 2) 2) 시행령 별표 2에 비밀유지계약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추가하고 위반행위자가 대기업인 경우와 중소기업인 경우를 구분하여 과태료를 책정함 출처: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65955?pageIndex=1		21.11.09. ~ 21.12.20.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 기사

[조선일보][기사]사업주 처벌 중대재해법 만들어놓고, 또 건설안전특별법(2021.11.10)

https://www.chosun.com/national/labor/2021/11/10/7LBKHPRSPJH6HJKCRDL3YABY5E/?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주요내용 산업재해를 강하게 처벌하는 각종 법안이 도입돼 건설업계가 초비상인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이 건설업계를 타깃으로 한 별도의 산업재해 특별법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 정부와 여당이 도입을 추진 중인 '건설안전특별법'은 작년 4월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건을 계기로 도입 논의가 시작됨. 작년 9월 여당이 발의했지만 실제 법안 작성은 국토교통부가 주도했으며, 여당은 야당과의 협의를 거쳐 조만간 법안 심사를 진행할 방침임. 이 법은 건설공사에서 안전 관리 소홀로 사망자가 생기면 발주자·시공자·하청업자·감리자 등을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형사 처벌함. 법인도 1년 이하 영업정지나 연 매출액 3% 이하 과징금을 물리며, '책임을 강화해 건설 부문 산재를 줄인다'는 취지. 하지만, 다른 법과의 중복 문제 등이 논란의 여지가 있음.

[법률신문][기사]법무법인 대륙아주,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과 시사점' 강의(2021.11.09)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74179

주요내용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중대재해 자문그룹 소속 구성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를 초빙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함. 정진우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 쟁점 분석 및 대응방안을 중점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는 각 조항별 대비 착안 사항 △고려해야 할 양벌규정 △의무이행 주체와 관리감독 주체의 책임 분리 △지배운영 관리 △안전보건관계법령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근로기준법 등에서의 상충과 충돌 부분 등을 강의함. 질의응답 시간에서는 중대재해로 인해 상법상 구상권 청구가 들어올 수도 있으나, 누군가가 별도로 구상권에 관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 이상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되는 문제는 아직 우려할 단계가 아니라고 설명함.

[이데일리][기사]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석 달 앞두고 산재사망 여전…"中企 집중지원 시급"(2021.11.08)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84086629243752&mediaCodeNo=257&OutLnkChk=Y

주요내용 근로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경영책임자까지 처벌받을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하기까지 석 달 여를 앞두고 있음. 그러나 추락·끼임 사고 등 건설업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산재 사망사고는 크게 줄지 않는 상황임. 전문가들은 법 시행 전까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등을 통해 점검 역량을 키우고, 중소기업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을 집중해야한다고 지적함. 수출 호조세 등의 영향을 받아 회복세를 보이는 제조업의 경우 산재사고 사망자가 오히려 늘음. 고용부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까지 산재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는 건설업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집중점검에 나서고 있음. 최근 5년간 사망사고가 다발한 지역, 이른바 '레드존'을 선별해 집중관리함.

한편, 전문가들은 산재 예방을 위해선 점검만큼 노사협력도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산재예방 체계 구축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정부의 지원을 집중해야한다고 제언함.

담당 변호사 및 전문인력

입법전략센터



차동언
파트너변호사

T : 02-3016-8720
E : decha@draju.com



이승철
고문

T : 02-3016-8706
E : sclee@draju.com

공정거래부문



구상모
파트너변호사

T : 02-3016-5349
E : smkoo@draju.com

기업부문



안호봉
파트너변호사

T : 02-3016-5374
E : hbahn@draju.com

ESG 자문그룹



이상봉
파트너변호사

T : 02-3016-5276
E : sblee@draju.com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17 동훈타워 7,8,10~16층
T. 02-563-2900 E.pr@draju.com W. www.draju.com